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권영숙 의원)

의 번 호	19-99
-------------	-------

발의년월일 : 2019. 7.

발의자 : 권영숙, 김기석
이홍민, 장덕준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 및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쓰기 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또는”과 “및”을 함께 쓴 규정을 주체범위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또는”을 삭제하여 바꾸어 규정함(제1조)¹⁾
- 나. 일본어투 표현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바꾸어 규정함
(제1조~제2조)
- 다. 비용지급의 예외대상자 신설(제3조)
- 라. 비용의 지급 기준을 알기 쉽게 규정함(제4조)
- 마. 한자어투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규정함(제5조)

1) 참조: 「2018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367 제3장 용어와 표현, p.393 제4장 문장작성의 원칙(법제처 발행)

3. 예산조치: 필요없음

4. 입법예고: 2019. 7. 16. ~ 7. 20.

5. 개정조례(안): 별첨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증인등에”를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를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비용지급의 예외)”를 “(비용 지급의 예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비용의 지급 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서울특별시 마포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따른다.

제5조의 제목 “(비용지급일수의 계산)”을 “(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증인등에”를 “증인 등에”로, “증인 등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를 “증인 등으로서 머무른 날짜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비용의 지급제한)”을 “(비용 지급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증인등”을 “증인 등”으로, “인정할만”을 “인정할 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및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비용)</u> ① <u>증인등에</u>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p>	<p><u>제2조(비용)</u> ① <u>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u>(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p>
<p>② <u>제1항의 규정에</u> 의한 비용이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에</u> 따른 비용 이외-----.</p>
<p><u>제3조(비용지급의 예외)</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u>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u> -----.</p>

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중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중 제2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중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중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의 지급제한) 중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제4조(비용의 지급 기준) 중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따른다.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중인 등에 -----

--- 증인 등으로서 머무른 날짜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중인 등-----
-- 인정할 만-----
-----.